

## 교습비등 게시표

2023 년 2 월 1 일 현재

[단위:원]

교습 과정	총교습 시간 (분/월)	교습비	징수단위 (월,분기)	기타경비						합계
				모의 고사 비	재 료 비	피 복 비	급 식 비	기 숙 사 비	차 량 비	
주2일 기초반	936분	230,000	월							230,000(245원/분)
주3일 초급반	1088분	270,000	월							270,000(248원/분)
주3일 중급반	1256분	310,000	월							310,000(246원/분)
주3일 고급반	1336분	330,000	월							330,000(247원/분)
주3일 특급반	1446분	360,000	월							360,000(248원/분)
주2일 중급반	1246분	310,000	월							310,000(248원/분)
주2일 고급반1	1446분	360,000	월							360,000(248원/분)
주2일 고급반2	1464분	360,000	월							360,000(245원/분)
주1일 고급반 1	1008분	250,000	월							250,000(248원/분)
주1일 고급반 2	1260분	310,000	월							310,000(246원/분)
단과 특강반 1	336분	78,000	월							78,000(232원/분)
단과 특강반 2	420분	98,000	월							98,000(233원/분)

「경기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3년 2 월 1 일

에스키어학원 설립·운영자

(주) 에스키에듀 (서명 또는 인)

### 유 의 사 항

1.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.
2.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3.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(주출입구 및 교습비등 징수 장소 앞)

###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분	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2.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	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 과외교습자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	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	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	없음	
		2) 독서실의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				학습장소 사용 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		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	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